

의안번호	2220065
의 퇴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6.8.31.
추 계 번호	26D36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억 5,400만원 등 5년간 총 42억 7,000만원 (연평균 8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응시수수료 면제 (안 제85조의2)	854	854	854	854	854	4,270	8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5조의2 (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6490호)」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5조의2(응시수수료의 면제)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서 기존에 부과하던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응시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봄
 -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던 수수료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개정안은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 향후 응시 인원 변화 추이 및 이에 따른 응시수수료 감소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최근 3년간의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수수료 납부액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응시수수료 수입 감소액은 연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면 응시수수료 납부 확인·반환·면제자격 검증 등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나, 해당 절차 간소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응시수수료 납부 확인·반환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자에게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 면제자격 검증은 원서접수 단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실시간 조회) 등을 활용하여 현재 별도 검증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본 개정규정을 관련 대통령령의 정비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신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85조의2)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응시수수료 감소액은 최근 3년간의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수수료 납부액의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추정함

○ 응시수수료 수입 감소액은 연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 2]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수수료 납부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연평균
5급 공채/외교관	120	116	114	—
7급 공채	197	179	258	—
9급 공채	588	493	497	—
합계	906	788	869	854

주. 단수 조정에 따라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3년간의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수수료 납부 현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연간 8억 5,400만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3]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응시수수료 면제	854	854	854	854	854	4,270

주: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는 추계기간 이후에도 매년 발생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